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498-01

# 농어촌인성학교
# 안전관리 매뉴얼(개정)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 목 차


제1장 안전관리 기본 운영원칙 ····· 1

Ⅰ. 안전관리 매뉴얼 ····· 3

Ⅱ. 안전사고 관리 및 대응체계 ····· 4

Ⅲ. 안전사고 단계별 예방 및 조치 ····· 5

제2장 체험활동별 안전관리 수칙 ····· 15

Ⅰ. 체험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수칙 ····· 17

제3장 유형별 안전관리 ····· 41

Ⅰ. 시설물 안전 대응관리 ····· 43

Ⅱ. 소방·화재 대응관리 ····· 47

Ⅲ. 식중독 및 식품위생 대응관리 ····· 56

Ⅳ. (성)폭력 사건예방 및 발생 시 대응관리 ····· 59

부 록 ····· 65

참고1. 안전관리 종합점검 자가진단표 ····· 67

참고2. 안전관리 종합점검 일일진단표 ····· 70

참고3. 인성학교 안전관련 준수사항 ····· 72

참고4. 시설물 안전점검 참고사항 ····· 73

참고5.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예시) ····· 85

# 제 1 장
# 안전관리 기본 운영원칙

# Ⅰ 안전관리 매뉴얼

## 1. 안전관리 매뉴얼이란?

◎ 농어촌인성학교로 지정된 마을권역에서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유형과 예방 및 대응방법과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정리한 자료집을 말한다.

## 2. 안전관리 매뉴얼 활용

◎ **활용시기**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 준비단계와 활동단계, 사고 시 대응, 사후관리 등 농어촌인성학교 운영 전반

◎ **활용영역 및 구성**

- **(1장) 안전관리 기본운영원칙** : 안전관리 및 대응체계, 단계별 예방 및 조치 사항, 사고 시 초동대처방법 등 기본원칙 종합안내
- **(2장) 체험활동별 안전관리수칙** : 자연·환경체험 / 전통문화체험 / 스포츠·레저체험활동 등 활동별 기본안전수칙 안내
- **(3장) 유형별 안전관리** : 안전점검 계획수립 / 소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 (성)폭력 사건예방 및 발생 시 대응관리
- **(부록) 활용서식** : 농어촌인성학교에서 활용가능한 서식 제공

# Ⅱ 안전사고 관리 및 대응체계

## 1. 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

### 1. 안전사고 대응 및 관리 조직

| 구분 | 세부내용 |
|---|---|
|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 | ◦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br>◦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및 교육 |
| 농어촌인성학교 | ◦ 소방·시설물 및 식품위생 안전관리 및 정기적 점검<br>◦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 연계 |
| 시·군 / 해당학교 | ◦ 대규모 안전사고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 2. 안전사고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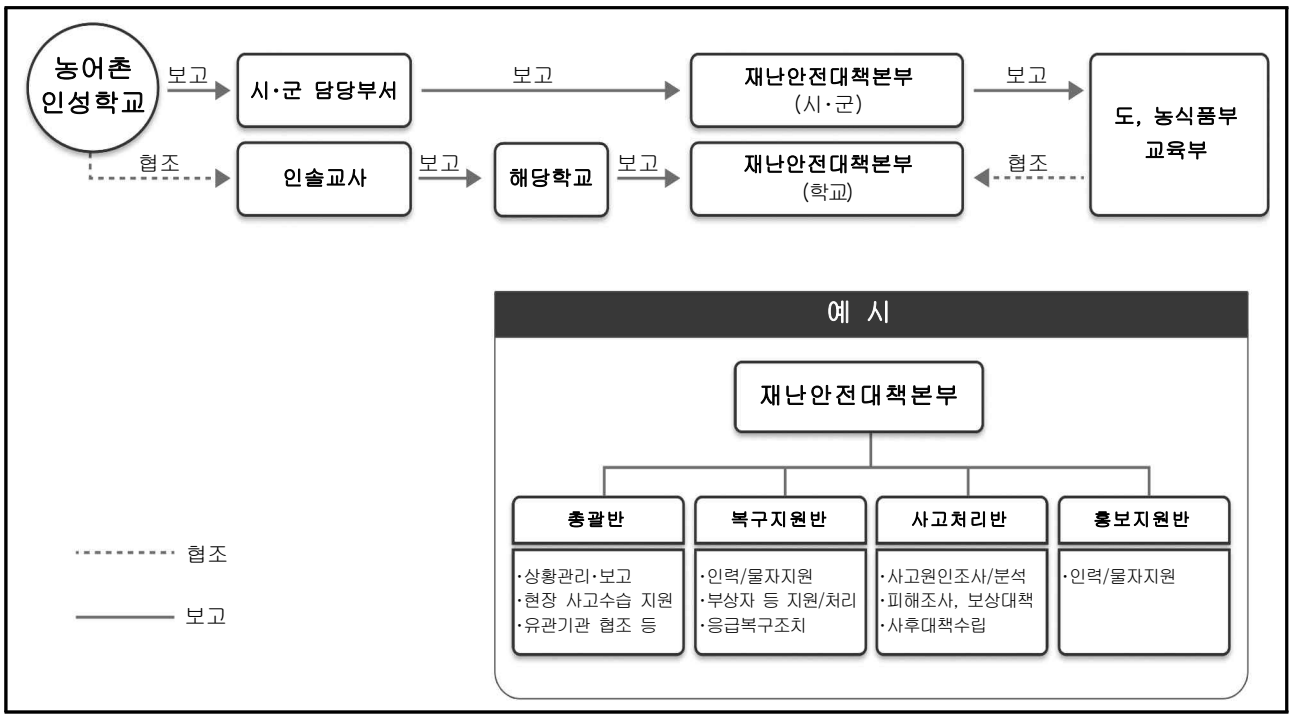


※ 1. 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발생 시·군 및 학교소재 시·군에 설치

2. 안전사고 발생 시 농어촌인성학교는 대응 체계에 따라 시·군 담당부서에 상황을 보고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함

3. 해당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의 절차 준수

# Ⅲ 안전사고 단계별 예방 및 조치

## 1. 농어촌인성학교별 안전사고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농어촌인성학교는 효과적·일상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안전사고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사고를 관리해야 한다.

◎ 마을권역 위원장은 당연직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식품위생, 시설관리, 체험활동 등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보험 가입, 관계자 교육, 정기점검, 운영원칙 준수, 사고시 적절 조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2. 농어촌인성학교 안전사고 대응 행동요령

### ❑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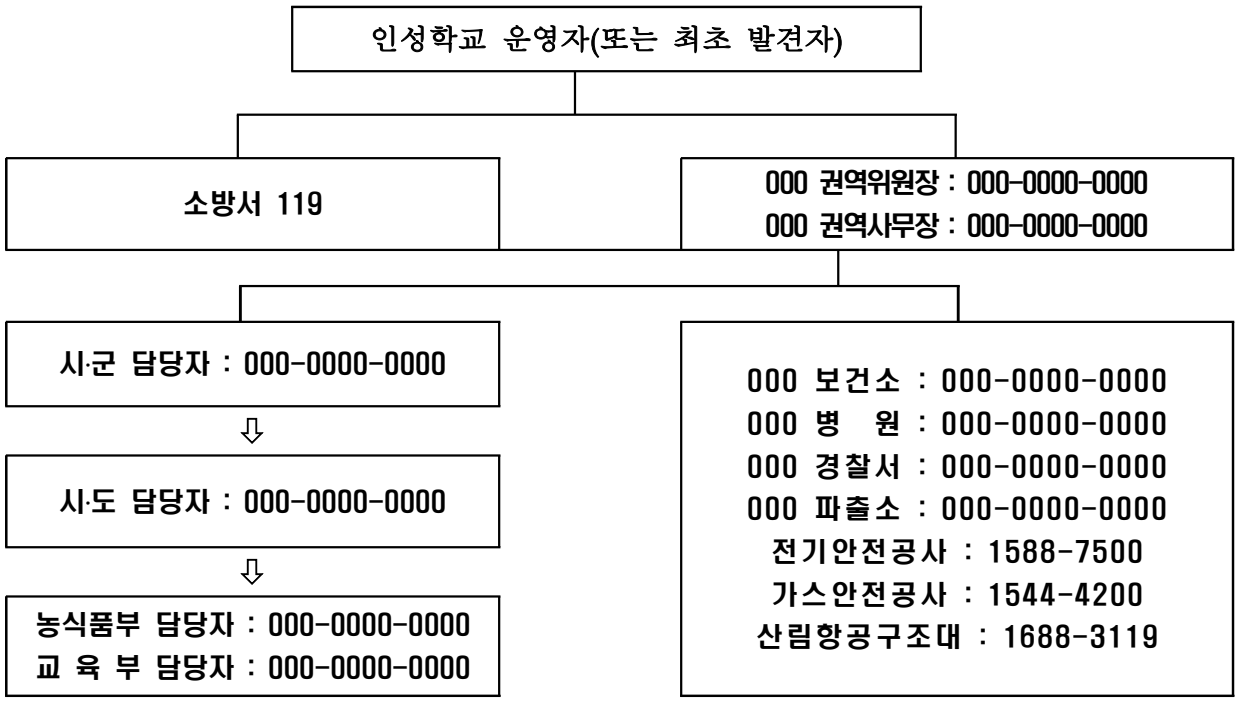

## ❑ 안전사고 발생 초기 대응 요령

| 분야별 | 대응시간 | 긴급 조치 | 주요 안전사고 대처요령 |
|---|---|---|---|
| 체험 활동 사고시 | 즉시 (10분) | **119 신고 (병원)**<br>■ 사고자 응급처치<br>■ 체험객 현장 안전확보 | **(골절·탈구)** 부목으로 고정(출혈시 압박), 심신안정 유지<br>**(수지절단)** 지혈, 절단부위를 마른 거즈로 싸 비닐봉지나 방수용기에 담고 얼음위에 보관<br>**(화상)** 흐르는 찬물로 10분 이상 씻은 후 거즈로 화상 부위를 덮고 붕대는 느슨하게 감음<br>**(물놀이 사고)**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실시<br>**(호흡곤란)** 손을 환자의 흉부(유두선중앙)에 두고 압박실시 |
| 화재 전기 가스 사고시 | 즉시 (10분) | **119 신고 (병원, 전기·가스안전공사)**<br>■ 전기, 가스 차단<br>■ 체험객 안전장소 대피 | **(화재)** 출입문을 열기 전에 문을 손등으로 대어보거나 손잡이를 만져봄. 연기가 있을 경우 낮은 자세로 대피<br>**(산불)** 바람이 부는 쪽으로 불길이 확산하므로 풍향을 고려하여 화재 진행경로에서 벗어남<br>**(감전)** 사고자 주변의 전선 또는 기기의 전원 스위치를 차단. 고무장갑·장화 등을 착용한 후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건을 이용 기기 또는 전선으로부터 사고자 분리<br>**(가스중독)** 연소기 콕, 중간밸브, 용기밸브 잠금 및 환기 |
| 음식 위생 사고시 | 즉시 (60분) | **119 신고 (병원, 보건당국)**<br>■ 음식공급 중단, 현장보존 | **(식중독)** 설사 증세가 있는 경우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 같은 식사 한 사람들은 동일 증상 여부를 보건소에 신고, 의사 진단 없이 지사제 등 복용 금지<br>**(집단급식소)** 급식 현장을 그대로 보존, 설사환자파악·현장조사 등 보건소 역학 조사 협조, 조사 완료 후 시설과 기구에 대한 살균·소독, 조치 완료 전 까지 음식 제공 금지 |
| 자연 재해 시 | 즉시 (60분) | **119 또는 1688-3119신고 (산림항공구조대, 지자체)**<br>■ 체험객 안전장소 대피 | **(산사태, 폭우)** 삼림내에 있을 경우 계곡부 등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피신<br>**(폭설)** 지붕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대피<br>**(지진)** 밖인 경우 블록 담이나 대문기둥, 가로등 전선 등에 접근하지 말고, 건물내인 경우 튼튼한 테이블 밑으로 피신 |

**※ 사고발생시 비상연락 체계와 안전사고 발생 초기 대응 요령을 반드시 비치할 것**

## 3.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보험가입

◎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마을권역 내에서 방문객(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화재·상해 및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함.

- 청소년 수련시설 등 청소년 대상 체험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한 보상한도 이상의 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보상한도)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상, 부상의 경우에는 **[참고5]**에서 정하는 금액에 따라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련 보험가입 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함

* 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 상해보험 가입조건 및 내용

| 항 목 | 보상한도액(안) |
|---|---|
|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 ◦ 대인 1인당 2억원, 1사고당 무한대<br>◦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
| 구내치료비 담보 | ◦ 1인당 2백만원, 1사고당 5백만원 |
| 생산물(음식물)책임 | ◦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1억원 |

*** 래프팅, 활쏘기, 뗏목타기 등 마을권역별 특성을 활용하여 위험한 레포츠 활동을 할 경우 특약에 추가 가입해야 함**

* 위의 보상한도액(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사례와 농어촌공사의 휴양체험마을 상해보험을 참고하여 권장(안)을 제시하였음. 보상한도액을 참고하되 마을 프로그램 특성 등을 반영하여 변경 가능함.

◎ 화재보험 가입조건 및 내용

| 항 목 | 보상한도액 |
|---|---|
| 화재담보(건물) | ◦ 마을권역별 시설물 설치 규모 및 현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보험사와 협의 후 가입 |
| 화재담보(시설) | |
| 화재담보(집기, 비품) | |
| 화재담보(동산) | |

# 4.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 ❑ 농어촌인성학교 안전관리 주요영역별 관리항목

◎ 체험교육 활동, 소방·시설물, 식품위생 등 주요영역별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주요내용 숙지 및 활용

* 2장 체험활동별 안전관리 수칙 활용
* <부록> 안전관리 종합점검 자가진단표[참고1], 안전관리 종합점검 일일진단표[참고2], 안전관련 준수사항[참고3], 시설물 안전점검 참고사항[참고4],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참고5]

◎ 체험교육 활동

| 구 분 | | 주요내용 |
|---|---|---|
| 자연·환경 체험활동 | 농산물 수확, 채취 | ◦ 긴팔·긴바지 등 신체 보호을 위한 의상 착용 안내<br>◦ 호미, 망치, 톱 등 기구를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교육<br>◦ 갯벌, 하천 등 위험지역에서 체험활동 시 보호장비 착용 확인 및 독자적 행동금지 안내<br>◦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구급약 구비 |
| | 전통공예 | |
| | 갯벌, 물놀이, 캠핑 등 | |
| 전통문화 체험활동 | 유물·유적지 탐방 | ◦ 독자적 행동 지양 및 체험지도사 등 담당자 지시 준수 안내<br>◦ 접근금지 및 제한구역 등 출입 시 유의사항 안내<br>◦ 2~3명씩 팀 구성을 통한 탐방 유도 |
| | 민속마을 등 탐방 | |
| 스포츠 레저활동 | 등산, 수영, 래프팅 등 | ◦ 등산 등 산행 시 기후변화를 대비한 의상, 장비 착용 확인<br>◦ 구명조끼, 안전모 등 안전장비 구비 및 착용 확인<br>◦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구급약 구비 |
| | 스키 등 겨울놀이 | |

◎ 소방, 시설물 관리

| 구 분 | 주요내용 |
|---|---|
| 안전관리 체계 및 교육 | ◦ 소방, 시설물 안전관리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상시 운영<br>◦ 소방, 시설물 관리 교육 이수 및 정기적 점검, 일지 작성 관리 |
| 소방시설의 사용 및 점검 | ◦ 주요시설물 내 소화기, 피난유도등, 비상벨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유무 정기점검 실시 |
|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 비상구, 피난계단, 유도표지 등 화재 시 학생 등의 대피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점검 실시 |

◎ 식품위생 안전관리

| 구 분 | 주요내용 |
|---|---|
| 안전관리 체계 및 교육 | ◦ 자격증을 보유한 조리사 등 식품위생 관리책임자 지정 및 점검일지 작성<br>◦ 조리인력에 대한 식품위생 안전관리 내부교육 정기적 실시 |
| 복장 위생관리 | ◦ 조리실에서 앞치마, 머리수건 등 매일 세척·소독, 건조하여 착용 |
| 식재료 위생관리 | ◦ 식재료 반입 시 표시사항, 유통기한, 원산지, 중량, 포장상태 등 확인 후 식재료 특성에 따른 냉장·냉동보관 실시 |
| 배식 시 위생관리 | ◦ 배식 전 손세척을 하고,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 유무 점검<br>◦ 배식기구의 정기적 소독, 잔반 폐기 등 확인 |
| 조리기구 위생관리 | ◦ 식기, 행주 등 열탕·살균소독 실시<br>◦ 개수대, 조리대 등 수시세척을 통한 위생관리 실시 |

## ❑ 단계별 안전관리 원칙

| 단계 | 주체 | 활동내용 | 주요사항 |
|---|---|---|---|
| 준비 | 학교 및 교사 | 사전답사 | ◦ 이동 및 대피경로(소요시간, 혼잡시간, 휴게소 이용 등) 파악<br>◦ 숙박·식당·체험시설(수용인원, 시설허가, 보험가입, 이용료, 위생, 안전시설, 위험요소 등) 점검 |
| | | 사전학습 | ◦ 다양한 자료(인터넷, 팜플렛, 홍보물 등)를 활용, 연계 교과과정의 학습 또는 복습을 통하여 프로그램 이해 및 효과높이기 |
| | | 준비물 안내 | ◦ 농어촌인성학교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특징에 적합한 준비물 안내(긴옷, 긴팔, 운동화, 모자, 우의, 여벌옷 등) |

| 단계 | 주체 | 활동내용 | 주요사항 |
|---|---|---|---|
| 준비 | 인성학교 운영담당자 |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 ◦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및 유형별 관리책임자 지정·운영<br>◦ 농어촌인성학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br>◦ 마을권역 내 위험·지역 등 안전지도 개발·게시<br>◦ 소방, 시설물 안전 정기점검 및 일지작성<br>◦ 전문안전관리교육 이수(소방안전교육, 조리종사자 식품위생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br>◦ 운영관계자 대상 안전관련 내부교육 실시<br>◦ 양호실, 비상약 등 상비품 구비<br>◦ 참여학생 대상 유의사항 게시(참고 1) |
| | | 학교 사전협의 및 답사 대응 | ◦ 교사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 요구사항을 반영한 안전사항 보완<br>◦ 프로그램 공유를 통한 사전학습 유도<br>◦ 화재·상해 보험가입서 제공<br>◦ 체험교육장, 식당, 숙소 등 시설물 현황자료 제공 |
| 실행 | 학교 및 교사 | 학생 인솔 및 프로그램 지원 | ◦ 교통안전 준수, 식중독 예방, 공공질서 준수, 프로그램 참여 및 활동지원, 숙박 안전관리, 위험요소 통제 등 실시 |
| | 참여학생 | 프로그램 참여 | ◦ 프로그램 참여 시 유의사항 준수 철저<br>◦ 적극적인 참여 태도 유지 |
| | 인성학교 운영담당자 | 안전관리 유의사항 사전안내 | ◦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안전관리 유의사항 자료 배포 및 사전 유의사항 필수안내 |
| | | 프로그램 운영시 안전수칙 안내 | ◦ 체험유형별 프로그램 특성에 적합한 안전수칙 자료 배포 및 필수 사전안내 |
| | | 안전요원 배치, 안전수칙 준수 | ◦ 운영시 충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프로그램 운영(참고 2)<br>◦ (성)폭력 등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숙박시설 등에 전담인력 배치, 야간 동선 점검 |
| 사고시 | 학교 및 교사 | 사고발생 대응 | ◦ 교육청, 재난대책본부 등 자체 안전사고 대응체계에 따른 즉시 보고 및 조치<br>◦ (성)폭력 사건발생 시 학교와 학부모 전달 및 사후관리 실시 |
| | 참여학생 | 지시 이행 및 안정 | ◦ 마을선생님 및 교사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대피 등 협조 |
| | 인성학교 운영담당자 | 안전관리계획 실행 | ◦ 안전관리 대응체계 및 초동대처방법(학교 및 농식품부 보고 등)에 따라 신속히 대응<br>◦ (성)폭력 사건정황 및 학교, 경찰서 등 신고조치<br>◦ 상해사고 시 응급조치, 병원 등 우송 |

| 단계 | 주체 | 활동내용 | 주요사항 |
|---|---|---|---|
| 사후 | 학교 및 교사 | 수업과 연계하여 복습 | ◦ 체험프로그램 보고서 작성 및 사진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복습, 학습성과 정리<br>◦ 안전관리 및 프로그램 보완사항 등 관련 농어촌인성학교 의견교환 |
| | 참여학생 | 소지품 및 결과물 정리 | ◦ 참여소감 등 학습결과 정리<br>◦ 만족도 조사 참여를 통한 의견 개진 |
| | 인성학교 운영담당자 | 만족도 조사 및 감사인사 | ◦ 안전관리를 포함한 종합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을 통한 보완 조치<br>◦ 프로그램 참여 감사인사를 통한 네트워크 유지 및 후속 참여 유도 |
| | | 사고 후속처리 | ◦ 보험 등을 통한 사고 후속처리 |

**※ <참고1> 농어촌인성학교 안전지도 및 유의사항 (게시)**

◦ 마을안전지도를 참고하여 위험한 곳은 가지 않습니다.
◦ 선생님의 안내에 귀를 기울입니다.
◦ 체험의 규칙을 잘 지키고, 질서를 지켜 활동 합니다.
◦ 함께 체험하는 친구들을 배려합니다.
◦ 허락없이 농작물이나 가축에 손대지 않습니다.
◦ 농업인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넣거나 다시 가지고 옵니다.

**※ <참고 2> 농어촌인성학교 운영담당자 안전예방 수칙**

◦ 참여학생 대상 유의사항을 판넬 등으로 제작하여 참여학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필수적으로 게시한다.

◦ 교육자료집 게재 및 유인물 배포 등 문서를 통해 내용을 제공한다.

◦ 체험프로그램 실시 직전 반드시 참여학생·교사 대상 오리엔테이션, 사전교육 등을 통하여 유의사항 등에 관한 원칙을 공유한다.

◦ 농어촌인성학교 운영담당자(위원장, 사무장 등)는 체험활동 진행 전 방문객(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마을권역 내 위험지역 및 시설물 이용, 체험활동 진행 중 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유인물을 배포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 농촌인성학교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 농어촌인성학교 운영담당자(위원장, 사무장 등)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다치거나 아픈 사람이 체험활동에 참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양호실, 비상약 등)를 갖추어야 하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119, 병원, 보건진료소 등과의 비상연락체계를 반드시 구축·운영**해야 함

◦ 위험·취약지역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방벽, 방책(防柵), 위험표지물(안내표지판 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방문객(교사, 학생 등)이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상시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함

* 강·하천, 바다 및 산악 등 위험·취약지역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띠, 구명조끼 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방문객이 착용하도록 해야함

* 또한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방문객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함**

## ❑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 대처방법

◎ 체험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필요한 경우 병원 후송 또는 119 신고

* 119 도착시 까지 제2장 체험활동별 안전관리 수칙(6. 사고발생시 응급처치 방법 활용)

◎ 병원 후송 등 긴급하게 대처할 사안 발생 시 잔류 학생들에 대한 안전 및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

- 학교 교사 및 마을권역 담당자 등 안전관리 요원 배치

◎ '안전사고 대응체계'에 따른 관계기관 통보

- 입원치료 등 중대 인명 피해 사안 발생 시에 시.군담당부서로 1차 구두보고(사고발생 1시간 이내), 2차 서면보고(6하원칙에 의거 5시간 이내) 실시

◎ 안전사고 경위 파악 및 증빙자료 확보

- 목격자 증언 청취 및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 확보
- 사고경위 조사 시 학생들의 인권 존중 및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유의
-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인적 견해 표명 자제

◎ 안전사고 피해학생에 대한 위문, 위로 등 성의있는 자세로 신뢰 구축 필요

- 화재 및 상해보험의 보상제도 적극 활용

◎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계획 및 실행

<붙임>

# 안전사고 사안보고서

| | | | | |
|---|---|---|---|---|
| 인 성 학 교 | 학 교 명 | ○○권역 | 전 화 번 호 | |
| | 소 재 지 | | | |
| 학 생 의 소 속 | 학 교 명 | | 전 화 번 호 | |
| | 소 재 지 | | | |
| 사 건 명 | | | 발 생 일 시 | |
| | | | 보 고 일 시 | |
| 관 련 학 생 | 관련학생수가 많을 경우 별도 자료 첨부 | | | |

## ■ 사건 개요

■ 사건 내용(6하 원칙에 의해 기술)

■ 언론보도 내용(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 경찰 조사 내용(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 보고기준**

- **1차 구두보고(사고발생 1시간 이내)** : 입원치료 등 중대 인명 피해 사안 발생 시 시·군담당부서로 보고
- **2차 서면보고(사고발생 5시간 이내)** : <붙임> 서식에 의거 보고
- **자체 보고** : 단순 타박상, 찰과상등 사안이 경미하나 보험처리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보고서 작성 및 자체 관리

# 제 2 장
# 체험활동별 안전관리 수칙

# Ⅰ 체험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수칙

## 1. 주요 위험요소 및 발생 가능한 사고유형

◎ 각 체험활동에는 위험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활발한 신체활동이 중점이 되는 체험활동에는 위험요소가 사고로 발전될 가능성이 늘 상존해 있다.
◎ 따라서 주요 위험요소와 발생 가능한 사고유형을 알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주요 위험요소와 발생 가능한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구 분 | 사고유형 |
|---|---|
| 수영, 고기 잡기, 뗏목타기 등 물놀이 행사 | · 수영장 익사사고, 고기 잡기 행사 중 넘어진 사고<br>· 뗏목타기 중 손가락이 부딪힌 사고<br>· 물 썰매 체험 중 넘어지고 미끄러진 사고<br>· 심장마비, 익사사고 등의 상해위험 |
| 농작물 수확 및 자연채취 행사 | · 보리 베기 체험도중 낫에 다리를 베임<br>· 식중독, 유행성출혈열 등의 상해위험<br>· 체험학습 중 쓰쓰가무시병에 감염 |
| 벼 베기, 탈곡하기, 도정하기 등의 타작마당 | · 손가락 절단, 실명 등의 상해위험<br>· 벼 수확체험 중 볏짚이 눈 주위를 스치면서 이물질이 눈에 들어간 사고 |
| 썰매타기, 스키타기 등의 동계행사 | · 충돌, 전복으로 인한 상해위험<br>· 눈썰매로 인하여 넘어지고 부딪히고. 뒤집힌 사고 |
| 식물채집, 트래킹 등 경사로 행사 | · 추락, 전도에 의한 골절 등의 상해위험<br>· 하천변을 걸어가다 미끄러진 사고 |
| 그네, 널뛰기, 국궁 등의 민속놀이 행사 | · 추락, 전도 등의 상해위험 |

| 구 분 | 사고유형 |
|---|---|
| 농촌 체험행사(탈것)에 의한 사고 | · 경운기타기 체험 중 갑작스런 기계이상으로 넘어짐<br>· 경운기 트레일러가 움푹 페인 공간을 지나갈 때 떨어진 사고<br>· 경운기에서 내리다 넘어짐<br>· 자전거를 타고가다 혼자 넘어짐<br>· ATV(사륜오토바이)를 체험 중 잘못하여 언덕으로 미끄러져 구름, 체험하던 중 돌부리에 걸려 전복됨 |
| 어촌체험마을에서 갯벌 등의 사고 | · 갯벌 체험 중 조개류에 의한 다리부상(찔림, 베임, 찍힘)<br>· 바위에서 미끄러짐, 갯벌축구 중 상대방과 충돌 |
| 민박 등 공통위험 요소 | · 감전, 화재, 식중독, 알레르기, 전도 등<br>· 배즙을 먹고 알레르기 발생한 사고<br>· 화재사고로 마을에서 전시하던 민속품이 불에 타는 사고<br>· 건물 지붕으로 올라가 추락하는 사고 |

## 2. 자연·환경 체험활동

### 1. 농산물 수확 및 자연채취 행사 시

◎ 농작물 수확 및 자연체취 행사를 할 때 주의할 사항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알레르기와 발열성질환, 눈 질환이다. 각각의 증상과 안전수칙에 대하여 알아보자.

❑ 알레르기

- 사과(껍질), 살구, 바나나, 체리, 키위, 멜론, 복숭아, 파인애플, 자두, 딸기, 배, 토마토(초록색 씨) 등에서 과일 알레르기가 유발될 수 있는데, 흔한 증상은 과일과 접촉한 입술, 입 주위의 가려움증, 홍반·물집 등이다.

**【안전수칙】**

- 평소에 어떤 과일 알레르기가 있는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과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과일을 깎아서 먹어야 한다.
- 농약을 치지 않은 과일이라도 일단 흐르는 물에 한번 흔들어 씻은 후 먹는 것이 안전하다.
- 체험활동을 할 때 비닐하우스 안이 덥다고 아이들에게 반팔 옷을 입히는 것보다는 긴팔 옷과 긴바지를 입히는 것이 좋다.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를 틈틈이 발라주고,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 황사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좋다.

❑ 발열성 질환

- 벌초, 야유회, 등산, 밤 줍기, 텃밭 가꾸기 및 논, 밭, 과수작물 추수 등 야외활동이 빈번해지는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발열성질환 중 쓰쓰가무시병이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이 병은 풀에 붙어 있거나 설치류(쥐류)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의 유충이 우연히 사람을 물어서 걸리게 된다. 감염 후 보통 6일~18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발생하여 두통, 발열, 오한, 발진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1cm 크기의 피부반점이 생겨서 수일 만에 상처를 형성한다.

**【안전수칙】**

- 유행성 지역의 관목 숲이나 유행지역에 가는 것을 피한다.
- 밭에서 일할 때에는 되도록 긴 옷을 입는다.
- 야외활동 후 귀가 시에는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한다.
- 작업 중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않는다.
- 등산 등 야외활동 시 동물이나 곤충들이 싫어하는 기피제를 뿌리거나 긴소매, 양말을 착용한다.

❑ 안구 질환

- 벼 탈곡, 콩 타작 시 부주의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가을철 수확하기 좋은 밤 따기를 하다가 밤송이에 눈이 찔리면 밤 가시는 끝이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안구가 손상되거나 심한 경우 실명도 한다. 따라서 무엇인가가 튈 가능성이 많은 작업을 할 때는 눈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안전수칙】**

- 챙이 있는 모자나 안경을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 눈에 뭔가 들어갔다고 생각되면 비비지 말고 깨끗한 식염수나 물로 씻어 내 안전하게 제거한다.
- 고글 등 안구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밤을 따는 것이 좋다.
- 안과를 찾아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 기타 안전수칙**

◦ 체험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호미 등으로 위험한 행동이나 장난하지 않아야 한다.
◦ 허가되지 않은 경작지(논, 밭 등)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 수풀이나 우거진 곳에 들어가서 독충이나 뱀에 물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2. 전통공예 체험활동 시

◎ 못 박기, 톱질, 장작패기 등 날카로운 물체를 사용하여 체험활동을 진행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안전수칙】**

- 못, 톱 등 날카로운 물체를 들고 뛰어 다니지 않는다.
- 톱이나 날카로운 물체로 다른 물건을 끌어당기거나 가리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물체를 자르거나 체험할 때 나무 또는 가공물을 잡은 손을 주의한다.
- 대팻날을 떨어뜨리거나 날을 상대방 쪽으로 내놓고 다니지 않는다.
- 대팻날을 많이 빼서 무리한 힘으로 대패질하지 않는다.
- 아무리 작은 재료(못)나 작은 공구라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는다.
- 작업대 위에 너무 많은 공구를 내놓지 말고, 나와 있는 공구는 옆 사람을 다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 연필이나 못을 입에 물고 다니지 않는다.

## 3. 갯벌 체험활동 시

◎ 갯벌체험에는 뻘, 태양광, 밀물 등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다양한 경우의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갯벌체험 활동시의 안전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안전수칙】**

- 어민들이 갯벌 출입을 위해 만들어 놓은 진입로가 있는 경우에는 진입로를 이용해 출입하며, 진입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은 출입하지 않는다.

- 갯벌에는 절대로 어린이 혼자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어른도 혼자 들어가지 않는다.
- 갯벌에 발이 많이 빠진 경우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기어 나오며, 체험지도사 등 운영담당자의 도움을 받는다. 위급한 경우 119의 도움을 받는다.
- 갯벌에 맨발로 들어가지 않는다. 발에 잘 맞는 장화를 착용하며 샌들을 착용할 경우 반드시 양말을 착용한다. 갯벌에는 어패류의 패각 등이 있어 맨발로 출입할 경우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 갯벌체험시 되도록 긴 팔옷을 착용하며 창이 넓은 모자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며 썬크림을 발라 화상을 예방하고 식수를 준비해 탈수를 예방한다.
- 갯벌체험시 갑자기 안개가 낄 경우 만조시간과는 관계없이 즉시 갯벌에서 나오고, 방향을 잃었을 경우에는 갯벌에 조류로 인해 생긴 물결모양 결(연흔)의 방향을 살펴보고 경사가 완만한 연흔의 직각 방향으로 나오면 육지 쪽으로 나올 수 있다.
- 갯벌에서 관찰한 생물들의 서식지를 이동시키거나 잡아오지 않는다.
- 마을 공동 어장 또는 양식장이 있는 갯벌에서는 어장에 무단출입을 하지 않는다.

## 4. 물놀이를 이용한 체험활동 시

◎ 여름철에 빼 놓을 수 없는 체험이 물놀이 체험이다. 다른 체험활동 보다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할 수 있는 체험이다. 수영, 고기잡기 등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안전수칙】**

- 안전요원이나 어른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수영을 해야한다. 절대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물 깊이를 알고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합니다.
- 물에 들어갈 때는 손, 발 → 다리 → 얼굴 → 가슴의 순서로 몸에 물을 적신 후 준비운동을 한다음 천천히 들어간다.
-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푸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 등에는 즉시 물놀이 중지하고 밖으로 나가야한다.
- 위급할 때는 한쪽 팔을 최대한 높이 올리고 흔들어 도움을 청한다.
- 맨손고기잡기 장소 안에는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한다.
- 땟목타기, 래프팅을 할 때에는 헬멧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한다.
-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 122(해양긴급번호)로 신고한다.

## 5. 캠핑을 통한 체험활동 시

◎ 캠핑은 집을 떠나 산과 들, 강과 바다 등의 자연을 체험하는 활동으로서 텐트치기, 취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극기심과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다. 캠핑 활동 시의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안전수칙】**

- 강이나 계곡 등 호우에 취약한 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에 텐트를 설치하고 텐트 주위에 뱀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막기위해 백반 등을 뿌려둔다.
- 돌풍 등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텐트의 출입구는 바람이 들어오는 반대 방향에 위치를 잡아야 하고, 타프(방수처리를 한

캔버스나 얇은 판 모양의 소재를 활용한 그늘막)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낮추어 설치해야 한다. 또한 텐트가 날라가지 않도록 팩(텐트를 고정시키는 못의 일종)을 깊숙이 박고 수시로 망치질을 해주어야 한다.

- 비가 올 때를 대비하여 플라이를 씌우고 텐트 주위에 배수로를 만든다.
- 나뭇가지 등에 찔리거나 베이는 상처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파상풍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한다.
- 휴대용 가스레인지, 가스통, 칼 등의 위험한 취사도구는 안전하게 다뤄야 한다.

## 3. 전통문화, 역사 체험활동

### 1. 유물·유적지 탐방 등 체험활동 시

◎ 유물·유적지 탐방 등 체험활동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생산활동을 하였는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찰·체험해 봄으로써 역사와 현재를 연결하는 힘을 기르게 한다. 유물·유적지 탐방 시의 유의사항과 안전수칙을 알보자

**【안전수칙】**

- 독자적인 행동을 지양하고 체험지도사 등 운영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경로 표시 리본을 잘 보이는 위치에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해 두고, 방문객은 그 표시를 확인하면서 이동한다.

- 유물·유적지를 체험할 때 계곡, 절벽 등의 위험지역에는 가까이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 2. 박물관·민속마을 탐방 등 체험활동 시

◎ 박물관·민속마을 견학·체험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생활문화를 직접 만져보거나 느껴볼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박물관·민속마을 탐방 시의 유의사항과 안전수칙을 알아본다.

**【안전수칙】**

- 박물관·민속마을 견학·체험활동의 시작·종료시간, 최종 집결지에 대한 숙지 등을 충분히 숙지한다. 또한 단독행동을 삼가고 2~3명 이상의 팀을 이루어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
- 시설물의 이동경로를 벗어나 접근금지 및 제한구역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 4. 문화·예술 체험활동

### 1. 도자기 만들기, 천연염색·비누만들기 등 체험활동 시

◎ 문화·예술 체험활동은 도자기 만들기, 천연염색, 천연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특기·적성 신장 등 학교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예술 체험활동 시 유의사항 및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전수칙】**

- 독자적인 행동을 지양하고 체험지도사 등 운영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화기를 사용할 시에는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화재에 대비해야 하고, 화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체험활동 시 뛰어다니거나 주위 사람과 부딪치지 않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 5. 스포츠·레저 체험활동

### 1. 등산 등 산악 활동 시

◎ 산악 활동은 등산과 관련된 활동으로 강인한 정신력을 키워주는 스포츠 활동이나 날씨와 연관성이 많아 다양한 준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산악 활동 시 유의사항 및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전수칙】**

- 산악 체험활동 전에 본인의 건강상태 확인, 등산 목적에 맞는 옷 등 장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생수, 전해질 음료. 비상식량, 방수의류 등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 산에 오르고, 내려갈 땐 옷을 가볍게 하고, 쉴 땐 겉옷을 입어서 체열을 보존해야 한다.
- 좁은 산길에서는 올라가는 사람에게 길을 양보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 등산 중에 몸에 이상 발견 시 운영담당자 등 주변에 알리고 즉시 산을 내려간다. 이때에는 2명 이상이 동행하여 하산하는 것이 좋다.
- 반창고, 붕대, 삼각건, 소독약 및 외상연고 등 비상구급약을 구비하여 산악 체험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선등산자와 후등산자 간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 산에서 길을 잃거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스마트폰 GPS좌표확인 어플리케이션 및 주위에 있는 위치표지판을 이용해 119에 신고한다.

## 2. 수영, 래프팅 등 수상 활동 시

◎ 수상 활동은 수영, 래프팅, 윈드서핑 등과 같이 수영장 및 강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물과 관련된 체험활동으로써 다른 체험활동에 비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상 활동 시 유의사항 및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안전수칙】**

- 수상 활동 전에 본인의 건강상태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수영 등 물에 들어가기 전에 심장 마사지 등 충분한 운동을 한 후 체험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 수상 활동을 할 때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 래프팅, 윈드서핑 등 수상 활동 시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구명조끼, 구명튜브, 안전벨트, 안전모 등 수상 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 등을 착용한 후 수상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수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물속에 들어가기 전 수상인명구조원이 정해진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수영 등 수상 활동 시 수상인명구조원의 지시에 따르고 절대 장난으로 위급상황을 연출해서는 안된다.
- 물속에서 쥐가 났을 때에는 당황하지 않고 주변에 알린 후 숨을 크게 들이 쉰 다음 엎드린 채 쥐가 난 부위를 주물러 주면서, 인명구조원의 구조를 기다린다.

## 3. 겨울놀이 체험활동 시

◎ 겨울에는 눈과 얼음에 대한 체험활동을 많이 한다. 여름철의 물놀이와 마찬가지로 안전수칙을 지켜야 안전한 겨울철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스케이트, 스키, 눈썰매 타기 등에 대한 안전수칙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전수칙】**

- 안전사고에 대비해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적당히 휴식을 취한다.
- 눈썰매장을 이용할 때 5세 미만의 아이들은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타도록 한다.
- 다른 사람과 같은 방향에서 탄다.
- 방한장갑과 헬멧, 보호 장구도 반드시 착용한다.
- 초보자는 반드시 기술 강습과 안전교육을 받는다.
- 스키를 탈 때 리프트 탑승 대기 시 차례를 지킨다.
- 스케이트 날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신발이 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 아이들에게 운동 중에 떠밀거나 난폭한 장난을 못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의를 주어야 한다.

# 6. 사고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 1. 응급처치의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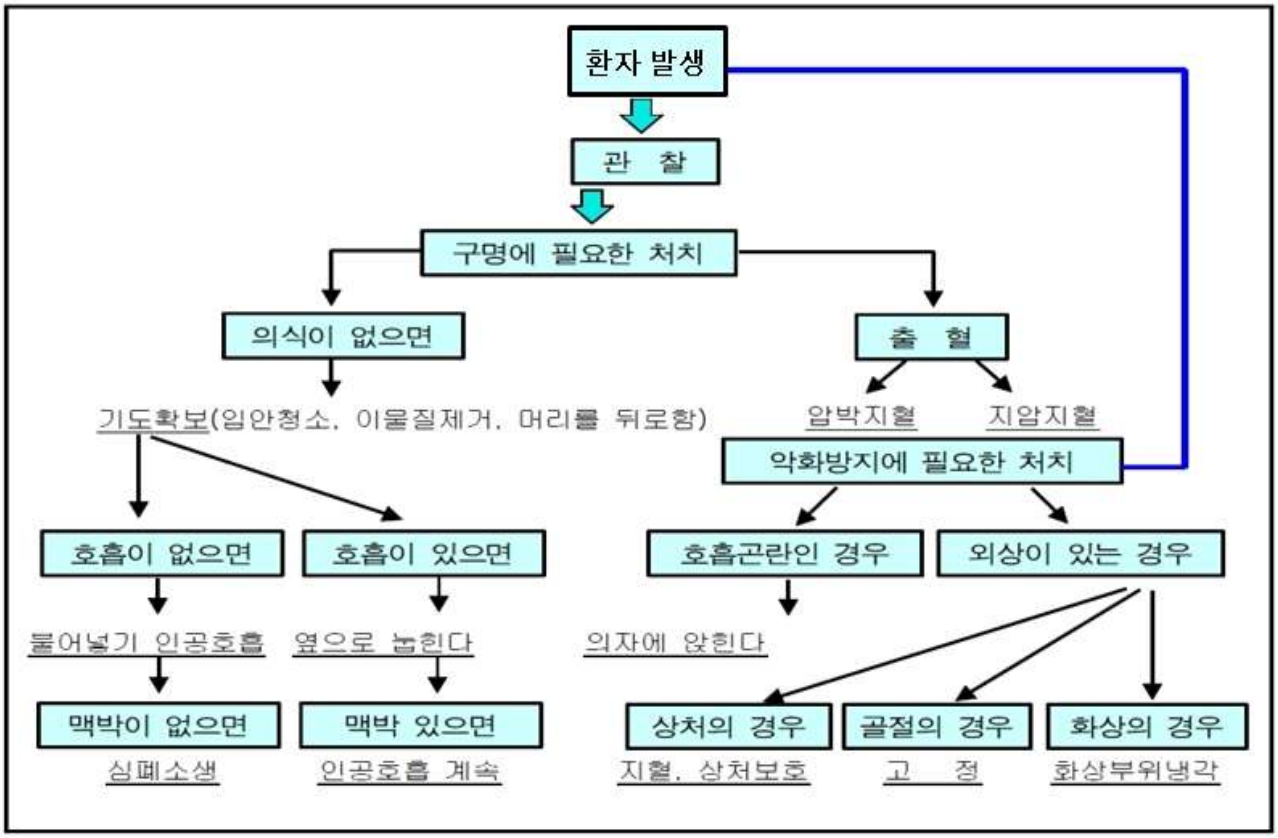


##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AED)의 활용

◎ 아주 긴박한 순간에 적절한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생명줄이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정지된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심장이 갑자기 멎게 되어 심장으로 가는 혈액의 공급이 중단된다. 결과적으로 온 몸의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고 이러한 경우 우리 몸의 여러 장기들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뇌이다. 다른 장기들에 비해 급격하게 손상되어 일반적으로 심장이 멎은 후 4~5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된다.

## ◎ 심폐소생술 방법

| | | |
|---|---|---|
| 1 | **환자의 반응 확인 및 119신고**<br>◦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소리로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며 반응을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다.<br>인공호흡을 위해 환자의 자세를 교정한다. | |
| 2 | **가슴 압박**<br>◦ 압박 위치를 한 손에 얹고, 다른 손을 그 위에 겹쳐 올린다. 분당 100~120회의 규칙적인 속도와 5~6cm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 |
| 3 | **기도 유지**<br>◦ 한 손으로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다른 손으로 턱 끝을 들어 올려 기도를 유지한다. | |
| 4 | **인공 호흡**<br>◦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후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는다. 숨을 불어 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하다. | |
| 5 | **가슴 압막과 인공호흡 반복**<br>◦ 30회 가슴 압박과 2회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실시한다. | |

## ◎ 심장 마사지의 위치 및 방법

< 심장 마사지 위치 및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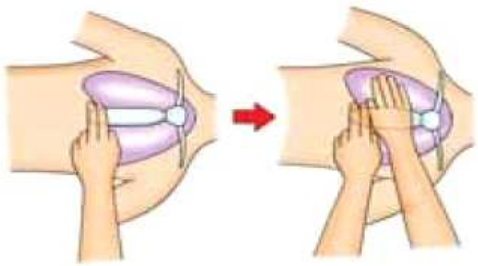

**【가슴 압박 】**

- **위치** : 유두선과 가슴뼈 만나는 중앙지점
- **깊이** : 4~5cm
- **속도** : 100회/분
- **비율** : 압박과 이완 비율 (50:50)
- **방법** : 압박 점에 한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으로 깍지를 끼고 팔꿈치를 굽히지 않은 상태로 환자의 몸과 구조자의 어깨가 직각을 이루면서 실시, 가슴압박 : 인공호흡 → 30 : 2

## ◎ 자동제세동기(AED)의 활용

◎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 AED)는 심장 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제세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는 의료장비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은 얼마나 빨리 제세동 처치가 시행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다. 2007년 12월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구급차, 기차, 항공기, 선박 등의 이송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고 있다. 자동제세동기는 의식과 정상호흡이 없는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하며 기본소생술 시행 중에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지체없이 적용해야 한다.

## ◎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 | |
|---|---|
| ① 전원을 켠다. | |
| ② 환자의 상체를 노출시킨 다음에 패드를 부착한다. 한쪽은 우측쇄골의 바로 아래쪽에 부착하며, 다른 한쪽은 좌측 유두 바깥쪽 아래의 겨드랑이 중앙선에 부착한다. 각 패드의 표면에 부착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한다. | |
| ③ 패드를 부착하면 기계가 심장의 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한다. 기계가 심장의 리듬을 분석 중에는 환자를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 | |
| ④ 기계의 분석이 끝난 이후 제세동이 필요하다면 기계가 충전이후 제세동 버튼을 누르라고 한다. 주변사람 및 구조자가 기계와의 접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제세동 버튼을 누른다. | |
| ⑤ 제세동이 필요 없거나 제세동을 시행한 이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기계는 자동으로 2분마다 심장리듬을 분석한다. 기계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자동제세동기의 적용은 응급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해서 실시한다. | |

**<자동제세동기 예시>**

## 3. 열로 인한 응급처치

◎ 열피로(탈진)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더운 곳에서 열심히 운동 하였거나 장시간 햇볕이나 고온에 노출되면 일어나는 것으로 토할 것 같은 느낌과 어지러움, 두통 등이 주된 증상이고 심하면 경련이나 실신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수칙】**

-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 편안한 자세를 취해준다.
- 의식이 있는 경우 희석된 이온음료를 마시게 한다. 단, 의식이 없으면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
- 경련 부위는 압력을 주어 마사지하거나 찬 수건을 대어주는 것이 좋고 경련이 계속 된다면 빨리 병원으로 후송한다.

## 4. 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

◎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는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구토가 일어나면 몸을 옆으로 기울여준다. 119의 도움을 요청한다.

**【안전수칙】**

- 환자를 뱀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 눕히고 가만히 안정시킨다.
- 물린 팔 또는 다리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시킨다.
-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는다. 비누는 독소를 불활성화 시킬 수 있다.

- 물린지 15분 이내인 경우에만 물린 부위의 10cm 위쪽(심장이 가까운 쪽)을 폭 2cm 이상의 넓은 끈이나, 천으로 묶는다. 묶은 후 손가락 하나가 통과 하도록 느슨하게 묶어야 하며, 절대로 꽉 조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5. 벌에 쏘였을 때 응급처치

◎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는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구토가 일어나면 몸을 옆으로 기울여준다. 119의 도움을 요청한다.

**【안전수칙】**

- 환자를 벌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19에 연락한다.
- 피부에 벌침이 남아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서 제거한다. (집게 등으로 제거 할 때, 침에 남은 독을 짜서 밀어 넣게 될 수 있다.)
-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고, 통증이 심한 경우 얼음을 주머니에 짜서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대준다.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입으로 아무것도 섭취시키지 않는다.

## 6. 기타 응급처치 방법

### 가.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

-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로 세척한다.
- 상처를 세척한 다음 지혈 및 감염방지를 위해 드레싱을 한다.
- 드레싱은 멸균붕대와 거즈를 사용해야 하지만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깨끗한 수건을 이용 할 수 있다.
- 상처를 문지르지 말고 과산화수소수는 사용하지 않는다.
- 봉합 필요한 상처에는 항생 연고를 바르지 않는다.
- 상처부위를 물에 담그지 않는다.

### 나. 외부출혈에 대한 응급처치

- 맨손으로 부상부위를 만지지 않는다.
- 두개골 골절, 눈 부상의 경우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 압박붕대를 단단히 감지 않는다.
- 지혈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 출혈이 있는 사지는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들어 올린다.
- 환자를 눕히면 상처 부위로 혈류가 줄어들고 쇼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 출혈이 계속되어 거즈가 피에 젖을 때 거즈를 제거하지 말고, 처음 댔던 거즈위에 소독된 거즈나 패드를 추가로 덧대고 압박한다.

### 다. 코피 응급처치

- 코의 뼈가 끝나는 바로 아랫부분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지그시 누른다.
- 10분정도면 대부분의 코피가 멈추므로 10분 후에 압박을 풀어주고 피가 멈추지 않으면 10분을 더 압박한다.

- 가능한 환자를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앞으로 숙이도록 한다.
- 기도로 피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절대로 목을 뒤로 젖히지 않는다.
- 코 위에 얼음물 주머니를 올려주면 지혈에 도움이 된다.
- 지혈 후 10분 간격으로 지혈 확인 후 30분간 지혈 후에도 계속 출혈이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 라. 수지절단에 대한 응급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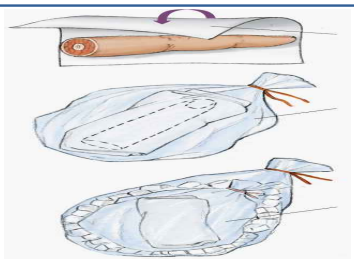

◦ 절단부위를 마른 거즈에 싼다.
◦ 비닐봉지나 방수용기에 담는다.
◦ 얼음위에 넣는다

### 마. 골절에 대한 응급처치

- 사고현장이 위험하지 않는 한 환자를 옮기지 말아야 한다.
- 손상이 의심되면 반드시 고정하고 뼈를 맞추려 하지 않는다.
- 골절로 굽어진 팔다리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고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 부목은 가볍고 단단하며 신체의 폭과 비슷하고, 한 관절 넘는 긴 길이를 사용 한다.
- 뼈가 외부로 돌출되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간 경우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부목 사용법 | ① 20~30분 이상 사용하지 말 것<br>② 무릎 뒤는 사용하지 말 것<br>③ 순환기 질병, 과거 동상 부위 등은 사용하지 말 것<br>④ 얼음찜질은 너무 빨리 중지하지 말 것 |
|---|---|

**바. 탈구 시 응급처치**

- 흔히 타박을 당하거나 넘어졌을 때, 심한 근육 운동을 할 때 탈구된다.
- 냉찜질을 해준다.
-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탈골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부목으로 고정 한다.
- 환자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대부분 발견한 상태)로 고정한다.
-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과 혈관 손상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119 및 응급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한다.

**사. 화상 응급처치**

- 흐르는 찬물로 10분 이상 씻어준다.
- 부기가 진행되기 전에 의복, 장신구 등은 제거한다
- 소독거즈나 깨끗하고 보풀이 없는 천으로 화상 부위를 덮고 붕대는 느슨하게 감는다.
- 화학약품 화상은 흐르는 물로 20분 이상 약품을 씻어낸다.
- 화상 부위를 건조한 소독 드레싱 또는 깨끗한 수건으로 덮는다.
- 눈의 화학 화상은 약하게 흐르는 물에 데고 10분 이상 씻는다.

**아. 귀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응급처치**

- 모래, 흙, 구슬 성냥골 등인 경우에는 우선 귀를 아래쪽으로 하고 귓바퀴를 잡아당기거나 털어본다.
- 벌레가 귀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귀에 손전등을 비추거나 불빛을 가까이 하여 스스로 나오도록 한다.
- 심하게 아프고 주위가 부었을 경우, 잘 들리지 않는 경우, 귀에서 진물이나, 농이 나올 경우에는 병원으로 즉시 후송한다.

## 안전사고 발생사례

❑ 딸기체험 행사 시 알레르기 발생 사례

◎ 2009년 4월 20일 두 아이들과 서울 근교에서 열리는 딸기체험 행사에 다녀온 김씨(40세, 주부)가족. 김씨의 두 아이들은 체험 후 병치레를 톡톡히 했다. 딸기를 따면서 마구 따먹었던 딸기 때문인지 입술 주위가 퉁퉁 붓고 물집이 생겼던 것이다. 게다가 딸기를 땄던 손등엔 마치 옻이 오른 것처럼 붉게 두드러기가 생겨 병원을 일주일 이상 다녀야 했다. 농작물 수확 체험에 참여할 경우 평소에 본인에게 어떤 과일 알레르기가 있는지 잘 알고 참여하여야 한다.

❑ 물놀이 안전사고 사례

◎ 2004년 8월 15일 낮 충북 보청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9살짜리 어린이가 수영 미숙으로 물에 빠져 숨졌고 오후 1시경 같은 장소에서 물놀이를 하던 5살짜리 여자 어린아이가 가족들이 식사하는 동안 물에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보청천은 강바닥의 높낮이가 심하고 물 흐름이 빨라 평소 사고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여름방학 때 산과 들에서 뛰어 놀거나 해수욕장, 수영장, 강가에서 물놀이를 즐길 일도 많지만 반드시 물놀이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 10세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사례

◎ 2009년 5월 11일 새벽 광주 이모(50)씨의 집에서 이씨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어머니가 119에 신고하는 동안 아들 유종군은 아버지를 상대로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유종군을 아버지가 지난해 심장마비로 쓰러진 이후 인터넷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익혀온 것이다. 이씨는 이송 도중 심장박동과 호흡이 되살아나고 의식까지 되찾아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는 반대로 몇 년 전 경기 도중 갑자기 쓰러진 프로야구 선수가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로 아직까지도 투병중이라고 한다. 심 정지 발생 현장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목에 걸린 이물질 제거로 아이의 생명을 구한 사례

◎ 2010년 4월 경북 구미에서는 민방위 교육 때 받은 응급처치법을 통해 아버지가 세 살짜리 아들의 목숨을 건진 일이 있었다.
그는 대형마트에서 쇼핑 중이던 자신의 아들이 사탕이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지난해 받았던 민방위 교육을 떠올렸다. 그것은 '영유아의 목에 걸린 이물질 제거' 관련 응급처치법이었고, 교육 받은데로 하자 2분만에 사탕 제거에 성공했다. 응급처치 교육과 신속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제 3 장
# 유형별 안전관리

# Ⅰ 시설물 안전 대응관리

## 1. 개 요

### 1. 목 적

각종 시설물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며, 농어촌인성학교의 체험교육 시설물에 안전사고 발생 시 체계적·조직적인 대처를 통해 인명 및 교육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2. 법적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0호(2013.04.26)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

### 3. 적용범위

가. 체험교육 시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도출,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현장에 배포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

나. 농어촌인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 4. 위기형태

가. 체험교육 시설물에 각종 붕괴조짐 등 안전사고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2. 시설물 관리체계

## 1. 농어촌인성학교 체험교육 시설 개념

체험교육 시설은 학생의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 실험·실습에 사용하는 설비 및 기계기구, 체육활동에 사용하는 운동기구 및 체육장, 급식을 위해 설치한 급식시설,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경 등 자연환경 시설, 그리고 이 모든 시설의 사용에 꼭 필요한 부대시설로 전기·통신, 상·하수도 및 정화조, 소방시설 등 시설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함

## 2. 체험교육 시설물 관리

가. 농어촌인성학교에서의 시설관리 총괄 책임자는 마을권역 위원장이고 위원장 및 사무장은 체험교육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함

나. 체험교육 시설은 학생교육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므로 농어촌인성학교 운영 담당자 및 마을권역 주민 모두의 관심과 보호·관리가 필요함

## 3. 체험교육 시설 안전사고 사례

| 시설 요소 | 사 고 내 용 |
|---|---|
| 계단 | • 계단에서 넘어짐<br>• 발을 헛디뎌 넘어짐<br>• 미끄러지면서 부딪침<br>•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유리창 파손<br>• 계단에서 뛰어가다 미끄럼 방지용 쇠줄에 손가락 낌<br>• 계단을 내려가다 계단벽에 부딪침<br>•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계단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침<br>• 계단난간을 타다 떨어짐<br>• 계단 난간 모서리에 부딪침<br>• 복도의 전시물 유리창에 부딪침<br>• 스탠드 계단에서 넘어짐<br>• 계단손잡이 사이로 뛰어 내림 |
| 난간 | • 난간을 통해 옮겨갔다가 되돌아오면서 1층으로 추락<br>• 1층 화단으로 추락<br>• 창문을 열고 나가서 추락 |
| 복도 | •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지면서 벽 모서리에 부딪침<br>• 체험교육 활동 시간에 바닥에 설치된 전선줄에 걸려 넘어짐<br>•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복도난간에 부딪침<br>• 복도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닥의 가시가 살에 박혀 부상 |
| 유리창 | •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부상<br>• 헐거워져 있던 창틀에서 유리가 떨어져 부상<br>• 출입문 유리창을 짚어 유리창 파손<br>• 유리가 파손되면서 날아간 유리조각에 이마 왼쪽 부위에 상처를 입음 |

| 시설 요소 | 사 고 내 용 |
|---|---|
| 문 | • 복도를 뛰어가던 중 문이 열리며 그 문에 세게 부딪쳐 부상<br>•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 상해<br>• 문이 문틀을 이탈하여 옆에 서있던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안면부 충격<br>• 환풍구에 발이 걸려 넘어져 부상<br>• 급히 체험교육장으로 뛰어 들어가다 미끄러져 문에 부딪침<br>• 휴식시간에 현관 유리문 옆에서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던 중 다른 학생이 문을 열어 유리문에 손가락이 낌<br>• 야외 체험활동을 위해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야외교육장으로 나가다 현관 입구에 있는 나무에 걸려 한 학생이 쓰러지자 뒤따라오던 학생들이 연거푸 그위에 넘어지면서 부상 |
| 외부 | • 야외체험장 한가운데에 돌출된 돌에 걸려 넘어짐<br>• 공사로 파놓은 배수로에 들어가자 이를 가지러 가다가 발을 헛디뎌 빠지면서 다리가 다침<br>• 체험활동 중 화분 등 교육기자재를 운반하는 중 인도블럭에 걸려 넘어지거나, 진흙탕에 빠져 부상 |
| 기타 | • 계단에서 올라오는 친구를 보려고 안전방지턱에 손을 짚고 밑을 보다가 2층 계단으로 떨어짐<br>• 실내 체험교육장의 환기를 위해 복도 유리창 턱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발이 미끄러져 머리를 복도 벽에 부딪힘 |

# Ⅱ 소방·화재 대응관리

## 1. 개 요

### 1. 목　　적

체험교육 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대규모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각급기관의 활동 방향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 2. 법적근거

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 소방기본법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적용범위

가. 대형화, 고층화 추세에 있는 교육시설(시설물, 전기, 소방, 가스 등)의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각급 기관의 위기관리가 요구되는 재난상황에 적용

나.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의 화재사고

○ 초·중·고 대상 체험교육 시설(야외체험 교육장 포함) 등

### 4. 화재형태

가. 화재발생 원인

○ 의도적 원인 : 방화, 테러 등에 의한 화재

○ 비의도적 원인 : 부주의 등에 의한 화재

· 전기, 담배, 가스, 불티, 유류, 불장난, 난로 등

· 농어촌인성학교에서의 체험 부주의에 의한 화재

나. 시설·기능별 화재 유형

○ 농어촌인성학교 체험교육 시설(교육장 등)의 화재

○ 농어촌인성학교 숙소 및 식당시설 화재

○ 마을회관 및 다목적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 2. 위기대응 지침

### 1. 목 표

○ 신속한 사태 수습 / 조치, 피해 확산 방지

### 2. 대응방향

가. 체험교육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관리체계 강화

나. 농어촌인성학교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가동으로 피해 최소화 및 사회적 위기로의 발전 차단

다. 2차 피해 확산방지 조치 및 긴급 복구활동 지원

## 3. 대응지침

가. 효과적인 예방활동 및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

나. 신속한 재난 상황접수·보고체제 확립

다. 현장 위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초기 대응체제 구축

라.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구축

마.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 등 협조·지원체계 구축

바. 2차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활동 실시

사. 효과적인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아. 재난대책본부 구성·운영

# 3. 분야별 안전점검

※ 참고 1(종합점검 자가진단표)는 반기 1회, 참고 2-1~2(일일진단표)를 이용 자가점검 권장

## 1. 소방시설 안전관리

### 가. 소방시설 안전점검

| 구 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
| 점검주기 | 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
| 점검시기 | 특정 점검시기 없음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
| 점검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 점검서식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
| 점검자 | 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 점검결과 | 자체 기록 보관(2년) | 점검일부터 30일내 소방서에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

**※ 자세한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

### 나. 소방시설 안전점검사항

- ○ 자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소방교육 실시
- ○ 소화기 설치장소에 소화기표시 및 소화기의 여부 확인
- ○ 옥내·외 소화전의 수량공급 및 밸브 개폐조작 여부 확인
- ○ 통로에 피난에 방해가 되는 물건 있는지 여부 확인
- ○ 비상구의 개폐 여부 및 창문의 방범창 제거 등 확인
- ○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쿨러 등의 작동 이상 유무를 확인

### 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총괄자 : 마을권역 위원장(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자 또는 시설관련자(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에 위탁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당시)

○ 신 고 처 : 관할 소방서장

○ 안전관리자의 선임 시 신고의무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 참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부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전기시설 안전관리

### 가. 전기시설 안전점검

| 구 분 | 정기점검 | 정밀점검 |
|---|---|---|
| 점검주기 | 연 1회 | 별도신청 점검가능 |
| 점검시기 | 사용전 점검 또는 정기점검 후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2달 | |
| 점검대상 |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75kW 미만 설비 | |
| 점검서식 | 전기안전공사 점검서식 | |
| 점검자 | 전기안전공사 | |
| 점검결과 | 부적합시 2월내 재점검 | |

※ 자세한 사항은「전기사업법」참조

## 나. 전기시설 안전점검 사항

- ○ 파손된 전기시설은 즉시 개·보수
- ○ 전기시설에 이상 발생시 점검업체에 신고
- ○ 최종 퇴실 확인 후 분전반 차단기 차단
- ○ 월1회 차단기 작동시험 실시
- ○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력기기 교체
- ○ 해빙기 심야축열난방 미사용시 심야전력차단기 차단
- ○ 점검업체를 통해 수변전설비를 청소하고 정밀점검 실시
- ○ 점검업체를 통해 분전반 선로의 누전 여부 측정

## 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총괄자 : 마을권역 위원장(권고사항)

○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기사,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체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당시)

○ 신 고 처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선임시기 :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

○ 신고기한 : 선임,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 참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 아래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전압 600V 이하인 전기수용설비로서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V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 휴지 중인 다음의 전기설비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

√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 사용설비까지 모든 전기설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 3. 가스시설 안전관리

### 가. 가스시설 안전점검

| 구 분 | 안전점검 | 정기점검 |
|---|---|---|
| 점검주기 | 연 2회 이상 | 연 1회 |
| 점검시기 | LPG 용기 교체 및 분기 1회 이상 | 최초 완성검사필증 교부 후<br>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
| 점검대상 | 충전용기 | (도시가스) 월예정사용량 2천㎥ 이상<br>(LPG) 저장능력 250kg 이상 |
| 점검서식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br>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호 참고 | 가스안전공사 점검서식 |
| 점검자 | 가스공급자 | 가스안전공사 |
| 점검결과 | 자체 기록 보관 | 정기검사증명서 |

※ 자세한 사항은「도시가스사업법」및「액화석유가스법」참조

### 나. 가스시설 안전점검 사항

- ○ 호스와 연소기 등의 이음매를 비눗물이나 점검액으로 점검하여 가스가 새지 않는지 수시 점검
- ○ 가스밸브 및 배관의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
- ○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균열, 붕괴될 위험 없는지 확인
- ○ 가스보일러 흡.배기구 시설 설치 상태 이상 여부
- ○ LPG 가스사용시 가스용기, 호스 손상여부 점검
- ○ 가스 경보기 등의 정상 작동여부

## 다.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총괄자 : 마을권역 위원장 또는 법인 대표

○ 안전관리책임자 :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수사항)

○ 신 고 처 : 시·군·구청장

○ 최초신고 : 시설 사용개시 전

○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전보로 인한 신고 : 변경 후 30일 이내

## 라. 규모별 안전관리 내용

**도시가스**

| 월 사용량 | 안전관리자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
| 3,000㎥ 미만 | 안전관리총괄자 1인 | 의무 아님 |
| 3,000㎥ 이상<br>4,000㎥ 이하 | 안전관리총괄자 1인 | 의무 가입 |
| 4,000㎥ 초과 | 안전관리총괄자 1인<br>안전관리책임자 1인 | 의무 가입 |

**액화석유가스**

| 저장능력 | 안전관리자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
| 250kg 이하 | 안전관리총괄자 1인 | 의무 가입 |
| 250kg 초과 | 안전관리총괄자 1인<br>안전관리책임자 1인 | 의무 가입 |

* 대상시설 :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제1종 보호시설

# 4. 화재 발생 시 조치사항

## 1. 초기 조치

### 가. 화재 신고

◦ 화재신고

· 목격자, 당직자 : 관할 119안전센터에 화재발생 신고

◦ 상황보고

· 1차 상황 보고 : 초기 화재 발생상황 보고

· 상황 보고요령

- 보고방법 : 최초 사고발생 인지 즉시 내부보고와 동시에 안전사고 대응체계에 따라 유선 보고(6하 원칙에 의거하여 보고)

### 나. 초기진압

◦ 화재유형에 따라 자체소화전 및 소화기 등으로 초기진압

◦ 피해상황 및 지원 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지속적으로 통보

### 다. 현장 활동 지원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검색활동 지원(소방관서 현장지휘대 지원)

### 라. 화재 종료 등에 따른 최종상황 보고

◦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안전사고 대응체계에 따라 관련 유관기관 보고

# Ⅲ 식중독 및 식품위생 대응관리

## 1. 개 요

### 1. 목 적

식중독 사고 발생시 각급 농어촌인성학교에서의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임

### 2. 법적근거

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 식품위생법

라. 전염병 예방법

### 3. 적용범위

가. 동일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증세의 식중독 환자가 각 농어촌인성학교의 급식 학생중 2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

나. 대량 환자 발생, 대규모 사망자 발생 등 식중독 분야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용

### 4. 위기형태

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 및 설사증세 등 집단 환자 발생

○ 환자의 증세만으로 전염병인지 식중독인지 속단하기는 곤란

· 고온다습한 하절기 및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수인성 또는 식인성 질환의 집단발병 및 확산

나. 유통과정의 식품오염으로 각 농어촌인성학교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 발생

○ 식재료 생산 및 유통과정 또는 조리실에서의 심각한 오염 사고로 농어촌인성학교 급식 학생중 2명 이상 식중독 환자 발생

- 식중독은 대체적으로 전염성이 없거나 미약한 것이 특징이나, 역학 조사를 통해 원인균을 밝혀내기 전에는 일단 전염성이 있다고 판단, 신속한 방역조치 필요

## 2. 위기 대응지침

### 1. 대응개념

가. 목　　표

○ 급식 관련 식중독 사고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여 체험교육 활동의 정상적 추진

나. 대응방향

○ 급식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

○ 식중독 사고 발생시 관할보건소와 교육청에 즉시 신고

○ 급식중단 및 식중독 환자 치료조치와 확산 방지

○ 보존식을 폐기하지 않으며, 음용수에 대한 소독 실시 금지

-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보건소의 역학조사 가검물 수거이후 폐기 및 소독을 실시

○ 해당 학교의 학교장 및 학부모 대상 관련 내용 통보 등을 통해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 유도

## 2. 대응지침

가. 안전한 식단 작성 및 식재료 선정과 구매·검수 철저

나. 지속적 조리기구 및 식재료 관리를 통한 위생적 조리 작업

다. 학생 및 조리종사원 등에 대한 식품안전·위생교육 강화

라. 배식과정 위생 및 급식 후 잔반처리, 청소·소독 철저

## 3.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가. 식중독 사고 발생여부 판단

- ○ 식품위생관리 총괄자 : 마을권역 위원장(당연직)
- ○ 식품위생관리 책임자 : 조리사 또는 조리책임자

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관리 지속 점검 및 모니터링

- ○ 조리사 및 조리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 ○ 종사자 복장, 식재료, 조리기구 등 주요사항에 대한 위생관리 등 점검일지 등을 관리하여 체계적 식품위생 관리 실시

다. 식중독 사고 발생시

- ○ 주요 증상을 평소와 비교하여 집단환자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집단발생으로 의심되면 식품위생관리 총괄자 및 책임자는 시·군청과 보건소에 신속히 보고
- ○ 안전사고 대응체계에 의거하여 상급기관에 즉시 보고
- ○ 보건소 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적절한 치료 등 조치
- ○ 전문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원인을 규명, 분석하여 해결될 때까지 농어촌인성학교 프로그램을 중단.
- ○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점검 및 안전대책을 강화, 재발 방지

# Ⅳ [성]폭력 사건예방 및 발생 시 대응관리

## 1. 개 요

### 1. 목 적

농어촌인성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 활동 시 발생 가능한 (성)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사고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2. 법적근거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3. 적용범위

가. 농어촌인성학교에서 체험교육 활동 진행 시 발생 가능한 신체폭력(구타), 언어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등 사건 발생 시 적용

농어촌인성학교 운영관리자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심리와 행동발달 상태에 대해 이해하고 (성)폭행 등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2. 폭력 사건예방 및 발생 시 대응관리

## 1. 폭력의 유형

| 유 형 | 예 시 |
|---|---|
| **신체폭력** |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br>◦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br>◦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br>◦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br>*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생간 폭력에 해당 |
| **언어폭력** |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카카오톡,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br>*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br>◦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카카오톡,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br>◦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카카오톡, 문자 메세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 **금품갈취** |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br>◦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br>◦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

## 2. 체험활동 시 폭력사건 예방 및 대처방안

| 구 분 | | 세부내용 |
|---|---|---|
| 예방 | 관계 형성 | ◦ 체험활동 진행 전 소집단으로 편성, 협동, 소통 등 참여학생 간 교류를 증진시키며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분위기 형성 |
| | 예방 교육 | ◦ 체험활동 시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가해·피해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사전교육 실시<br>※ 교육자료 : '학교폭력예방종합포털사이트(http://stopbullying.or.kr) 활용 |
| | 관찰 | ◦ 체험활동 진행 중에 수시로 참여학생들의 태도와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여 폭력의 징후를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 | ◦ 폭력사건을 인지했을 때 즉각적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 조치<br>◦ 인솔교사와 함께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 및 경찰서 등 신고조치**(학교폭력 신고·상담전화 : 국번없이 117)**<br>- 피해·가해 내용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br>◦ 상해사고 시 긴급 응급조치 실시, 필요시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우송 (119 신고 등) |

# 3. 성폭력 사건예방 및 발생 시 대응관리

## 1. 성폭력 정의 및 유형

| 구분 | | 세부내용 |
|---|---|---|
| 성폭력 정의 | | ◦ (문헌상) 성(性)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서 성(性)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한다.<br>-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성행위 또는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br>-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br>-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br>◦ (법률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로 대표적인 것으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을 들 수 있다.<br>* 성희롱의 경우에는 법률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상담 필요 |
| 유형 | 강간 | ◦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폭행, 협박, 무력 등을 통해 강제적 성관계를 갖는 행위 |
| | 성희롱 | ◦ 대체로 눈짓(위아래를 훑어보거나 뚫어지게 보기)<br>◦ 음란전화, 음란성 그림이나 동영상 보기, 성(性)을 암시하는 몸짓이나 표정 또는 소리, 데이트 강요,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 |
| | 성추행 | ◦ 성욕의 자극, 흥분,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주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를 만지는 행위) |
| | 기타 |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행위<br>◦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br>◦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

## 2. 체험활동 시 성폭력사건 예방 및 대처방안

| 구 분 | | 세부내용 |
|---|---|---|
| 예방 | 안전 지도 |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마을 안전지도 제작 및 안내,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지역을 이탈하지 않도록 유도<br>- 주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사각지대<br>- 주변에 가로등이 없고, 인적이 드문 논밭 및 야산 주변<br>* 마을권역 내 안전장소와 위험한장소를 알기 쉽게 지도 제작 |
| | 숙박시설 (화장실 등) | ◦ 성(性)별에 따라 숙박시설을 분리하여 운영<br>◦ 남·여학생을 동일 건물에서 숙박을 진행해야 될 경우 층별 및 통로 구분<br>- 특정시간 이후에 숙소 이동금지 조치<br>- 특히 욕실, 화장실이 침실 밖에 있는 경우에는 남·녀 동선 분리<br>◦ 학생용 숙박시설 인근에 인솔교사용 숙소 배치<br>* 숙박시설별로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성폭력 등 안전사고 예방 |
| | 사전교육 | ◦성폭력예방교육 실시<br>-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건강하고 모범적인 경계를 서로 존중하는 것이 성폭력 예방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교육<br>- 상대방이 원치않는 모든 성적 접촉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성폭력이라는 점을 설명<br>- 성폭력은 당사자(가해-피해학생)에게 심각한 고통과 후유증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강조<br>- 성폭력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였거나 경험하였을 경우, 반드시 인솔교사에게 알려 심각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목격한 사람이 먼저 신고하는 것이 중요) |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세부내용</th></tr>
<tr><td>예방</td><td>사전교육</td><td>- 성폭력 피해를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친구가 주변에 있을 경우 그 친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br>◦ 주류 등 반입금지 품목에 대한 사전 안내</td></tr>
<tr><td colspan="2">사고발생 시<br>대처방안</td><td>◦ 성폭력 사건 발생시 대처방안 및 사고처리 절차<br>사고발생<br>↓<br>초기대응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조치 … ◦ 피해 사실이나 피해자 신원에 대한 비밀 유지<br>◦ 피해자의 정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br>◦ 응급처치시 과정을 설명하여 피해학생이 안심하도록 조치<br>↓<br>사고조사 … 정황파악 및 조사 … ◦ 인솔교사와 함께 사건의 정황을 신속히 파악<br>↓<br>사고신고 … 112, 119<br>1899-3075 … ◦ 사고즉시 해당학교 및 경찰서 등 신고조치<br>교사의 경우 신고의무자)<br>◦ 피해, 가해 내용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br>↓<br>사고처리 … 피해자 응급 의료지원 및 증거확보 … ◦ 피해자 이송<br>-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1899-3075)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안내하는 전담의료기관으로 이송<br>- 입은 옷차림 그대로 씻지 말고 피해자 이송<br>◦ 증거확보 : 상처 등 사진촬영 및 증거물품 확보<br>(종이봉투에 보관)</td></tr>
</table>

# 부 록

## 참고 1 농어촌인성학교 안전관리 종합점검 자가진단표(반기 1회)

인성학교명 : 권역 점검일자 : 20 . .

| 구분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 조치사항 |
|---|---|---|---|---|
| | | 그렇다 | 아니다 | |
| 안전관리 체계 |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의 책임아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는가? | | | |
| | 안전관리를 위한 명문화된 지침과 점검표가 눈에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 | | |
| | 안전사고시 연락가능한 비상연락망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되어 있는가? | | | |
| |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의 책임아래 분야별(소방,전기, 가스, 식품위생등) 안전관련 교육과 종사인력에 대한 전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 지는가? | | | |
| | 시설 이용방법, 이용시 유의사항 등은 시설별로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가? | | | |
| 시설물 안전점검 |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물 (화재)보험은 적정한가? | | | |
| | 농어촌인성학교는 비상 시 소방차, 구급차 등의 접근이 용이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는가? | | | |
| | 주요시설(교육장, 실내체험장, 숙소, 식당 등)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가? | | | |
| | 주요시설(교육장 등)의 입구 중앙 및 양측에 손가락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주요시설(교육장 등) 내부는 통행, 피난, 방향전환 등을 하기에 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 | | |
| | 위험시설 및 지역(저수지, 강, 바다 등)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안내 표지만을 설치하였는가? | | | |
| | 농어촌인성학교 내외부 시설 및 특정지역의 붕괴·침하의 위험이 없는가? | | | |
| | 배수로 덮개의 설치 상태가 양호한가? | | | |
| | 주요시설(교육장 등)의 천정, 벽, 바닥의 누수가 없는가? | | | |
| | 시설물의(화장실, 샤워실)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청소하여 위생상태는 양호한가? | | | |

| 구분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 조치사항 |
|---|---|---|---|---|
| | | 그렇다 | 아니다 | |
| 화재예방 · 화재대응 | 가스 경보기 등은 정상 작동하는가? | | | |
| | 월 1회 가스가 새지 않는지 점검액으로 점검하는가? | | | |
| | 1개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기, 전열기구를 이용하지 않는가? | | | |
| | 손상된 코드선,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없는가? | | | |
| |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1회 이상 작동 점검을 하는가? | | | |
| |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상구, 소화기 등 소방기구 배치를 포함한 피난안내도를 게시하였는가? | | | |
| | 소화기는 접근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기의 충전량 상태는 적절한가?<br>(녹색 : 정상, 노란색 : 압력미달) | | | |
| | 주요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훼손되지 않고 작동 되는가?<br>(라이터 등 화기로 점검) | | | |
| | 주요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발신기)은 작동되는가? | | | |
| | 피난유도등은 식별 가능한 위치에 부착되어있고, 항시 점등되고 있는가? | | | |
| |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식별 가능한 위치에 부착되어 있고, 항시 작동되는가? | | | |
| | 피난계단, 비상구 등 화재 시 대피를 방해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은 없는가? | | | |
|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등에 설치된 잠금장치는 비상시 개방이 가능한가? | | | |
| |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 | | |

| 구분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 조치사항 |
|---|---|---|---|---|
| | | 그렇다 | 아니다 | |
| 식품위생 | 조리인력의 자격증, 교육이수여부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고 있는가? | | | |
| | 조리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조리에 참여하는가?(감기, 피부병, 설사 등 참여불가) | | | |
| | 식품 등의 조리·가공을 하는 자는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가? | | | |
| | 식품 등의 조리·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처리 하는가? | | | |
| | 복장, 식재료 관리, 조리기구 관리 등 식품위생관리 사항을 점검일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 | |
| |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 도구(집게 등)로 배식 하는가?(손으로 배식 금지) | | | |
| | 배식시간은 준수하는가? (음식 조리 후 1~2시간 이내 배식 권장) | | | |
| | 배식 후 남은 음식은 전량 폐기하는가? | | | |
| 인성교육 프로그램 안전성 |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동 시 발생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가? | | | |
| | 보험가입범위는 안전관리매뉴얼 권장사항에 적합한가? | | | |
| | 인성교육 진행 전 학생건강상태확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사전교육은 충분히 이루어 지는가? | | | |
| | 인성교육 관련 안전장비 및 비상 구급약품등을 구비하고 있는가? | | | |
| | 인성교육 관련 교구 및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 보수하는가? | | | |
| | 안전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식 응급대책계획이 실행 가능한가? | | | |

점검자 : 인

확인자 : 인

## 참고 2-1 농어촌인성학교 안전관리 종합점검 일일진단표

안 전 (○)
요주의 (△)
불안전 (X)

○○월 시설물 및 소방안전

| 내용 \ 일 | | 1 | 2 | 3 | 4 | 5 | . | . | . | . | . | . | . | . | . | . | . | 30 | 31 |
|---|---|---|---|---|---|---|---|---|---|---|---|---|---|---|---|---|---|---|---|
| 건물 | 균 열 상 태 | | | | | | | | | | | | | | | | | | |
| | 타 일 균 열 상 태 | | | | | | | | | | | | | | | | | | |
| | 주 변 배 수 상 태 | | | | | | | | | | | | | | | | | | |
| | 옥 상 과 하 중 상 태 | | | | | | | | | | | | | | | | | | |
| 가스 | 가스차단기작동상태 | | | | | | | | | | | | | | | | | | |
| | 중 간 밸 브 상 태 | | | | | | | | | | | | | | | | | | |
| | 경 보 기 작 동 상 태 | | | | | | | | | | | | | | | | | | |
| | 밸 브 · 배 관 상 태 | | | | | | | | | | | | | | | | | | |
| | 흡 배 기 구 시 설 상 태 | | | | | | | | | | | | | | | | | | |
| 전기 | 누전차단기작동상태 | | | | | | | | | | | | | | | | | | |
| | 콘 센 트 사 용 상 태 | | | | | | | | | | | | | | | | | | |
| | 전 선 피 복 상 태 | | | | | | | | | | | | | | | | | | |
| 소방등 | 소 화 기 작 동 상 태 | | | | | | | | | | | | | | | | | | |
| | 화재경보기작동상태 | | | | | | | | | | | | | | | | | | |
| | 목욕탕등 미끄럼방지상태 | | | | | | | | | | | | | | | | | | |
| | 구 급 상 자 비 치 | | | | | | | | | | | | | | | | | | |
| | 유 해 물 질 보 관 상 태 | | | | | | | | | | | | | | | | | | |
| | 모 서 리 등 안 전 조 치 | | | | | | | | | | | | | | | | | | |
| 점 검 자 ( ) | | | | | | | | | | | | | | | | | | | |
| 관 리 자 ( ) | | | | | | | | | | | | | | | | | | | |
| 특이 조치사항 | * (△), (×)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기재 | | | | | | | | | | | | | | | | | | |

## 참고 2-2 농어촌인성학교 안전관리 종합점검 일일진단표

안 전 (○)
요주의 (△)
불안전 (X)

○○월 위생시설 및 식품위생

| 내용 \ 일 | | 1 | 2 | 3 | 4 | 5 | . | . | . | . | . | . | . | . | . | . | . | 30 | 31 |
|---|---|---|---|---|---|---|---|---|---|---|---|---|---|---|---|---|---|---|---|
| 개인위생 | 위생용품 청결상태 (위생모, 위생복 등) | | | | | | | | | | | | | | | | | | |
| | 손소독 청결상태 | | | | | | | | | | | | | | | | | | |
| 원료및식품취급 | 부패변질등 식품상태 | | | | | | | | | | | | | | | | | | |
| | 유통기간 준수상태 | | | | | | | | | | | | | | | | | | |
| | 포장용기 사용상태 | | | | | | | | | | | | | | | | | | |
| | 보관적정상태 | | | | | | | | | | | | | | | | | | |
| | 원료세척상태 | | | | | | | | | | | | | | | | | | |
| | 교차오염방지보관 | | | | | | | | | | | | | | | | | | |
| 조리설비및시설 | 조리시마스크착용상태 | | | | | | | | | | | | | | | | | | |
| | 방충방서등방지상태 | | | | | | | | | | | | | | | | | | |
| | 조리기구청결상태 | | | | | | | | | | | | | | | | | | |
| | 작업장내 수세및소독시설 구비상태 | | | | | | | | | | | | | | | | | | |
| | 바닥배수상태 | | | | | | | | | | | | | | | | | | |
| 기타 | 먹는물 수질상태 | | | | | | | | | | | | | | | | | | |
| | 음식물쓰레기관리상태 | | | | | | | | | | | | | | | | | | |
| 점검자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특이 조치사항 | * (△), (×)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기재 | | | | | | | | | | | | | | | | | | |

## 참고 3 농어촌인성학교 안전관련 준수사항

| 시설 종류 | 준수사항 |
|---|---|
| 폐 교 |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출 것<br>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갖출 것<br>3.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출 것<br>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출 것<br>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출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br>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출 것<br>7.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용 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 |
| 그 밖의 마을공동 시설 |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출 것<br>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갖출 것<br>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출 것<br>4.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출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br>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출 것<br>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br>7. 화재 또는 열 관련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출 것 |

**※ 자세한 사항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

## 참고 4 농어촌인성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참고사항

◎ 농어촌인성학교 운영담당자는 시설물 안점점검에 관한 다음 사항을 인지하고, 해당 마을권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아래 사항을 점검·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인성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 1. 시설물 안전점검 시기

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실시

나. 해당년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실시

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해빙기, 동절기)

라. 수시 안전점검(재난발생 빈번 시기)

### 2. 시설물 안전점검 주요 내용

가. 교육시설물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점검하고 특히, 재난위험시설(D급·E급)에 대한 전담자 지정하여 특별 관리

  ○ 관리계획 및 이력카드 등을 작성하여, 재난위험시설물이 해소될 때까지 전담자 지정·관리

나. 농어촌인성학교 체험교육 시설물 침수에 따른 누전·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시설물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다. 침수·붕괴·산사태 등 재난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위해 요인 사전 제거

라. 경사면의 낙석 및 기타 토목분야 시설 점검

마.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 안전점검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성·운영

바. 농어촌인성학교 신·증축 공사장 안전점검

○ 시공업체로 하여금 기상특보 발령에 따라 재해방지책 지시

○ 공사장 주변 위험요소 사전제거 및 출입통제 강화

사. 타 기관 소유시설물

○ 재난요인이 될 수 있는 타 기관 소관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재난방지책 강구 요청

| 안 전 점 검 | | |
|---|---|---|
| 육안조사 | 계절별 주요 조사항목 | |
| ◦ 주변지표면 상태<br>◦ 작용하중 상황<br>◦ 부동침하, 변위·변형<br>◦ 콘크리트 강도(필요시)<br>◦ 균열<br>◦ 콘크리트 및 강재의 노후화현상<br>◦ 강재의 도장 및 내화피복 상태<br>◦ 강재접합부의 상태<br>◦ 부대시설 상태<br>◦ 주변 환경 변화 | 해빙기 | ◦ 석축·옹벽의 이상 유무<br>◦ 건축물의 부동침하 상태<br>◦ 건축물 주변지표면 상태<br>◦ 변위·변형 발생 유무<br>◦ 균열·손상 발생 유무 |
| | 우 기 | ◦ 건축물 지하실의 방수 상태<br>◦ 배수로 상태(건물주변, 옥상 등)<br>◦ 건축물 외부 부착물 상태<br>◦ 석축·옹벽의 이상 유무<br>◦ 건축물 주변지표면 상태<br>◦ 변위·변형 발생 유무<br>◦ 균열·손상 발생 유무 |

## 3. 재난위험시설(D·E급)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가. 각 기관별 D·E급 시설물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나. 재난위험시설 지정 절차

- ○ 해당 마을권역 위원장의 시설물 이상 발견(필요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 ○ 개축·재난시설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 개축·재난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 재난위험시설 지정

## 다. 시설물 상태 평가 기준

| 등급 | | 상태 | 구조구분 | 평가(조치)기준 | 비고 |
|---|---|---|---|---|---|
| 안전시설 | A급 | ○ 현재는 문제가 없으나<br>○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br>⇒ **안전시설** | | ○ 이상이 없는 시설 | 안전시설 |
| | B급 | ○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br>⇒ **간단한 보수 정비 필요** | 단순한누수 마감재보수 등 |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 안전시설 |
| 특정관리대상시설 | C급 |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br>⇒ **조속한 보강 일부시설 대체 필요** | 칸막이, 비내력벽, 적벽돌 등 |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 중점관리대상시설 |
| | D급 |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br>⇒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 기둥, 보, 스라브,계단 ,기초 등 (조적식 구조의 벽) |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br>○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 | 재난위험시설 |
| | E급 |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br>⇒ **사용금지 및 개축필요** | |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br>○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 재난위험시설 |

## 4.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 사항

가.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카드를 작성한다.

나. 비상연락망 및 관계기관 연락망을 점검·확인한다.

다. 건물 전체의 부동침하 현상을 확인한다.

라. 외벽 및 담장의 전도위험 부위가 있는지 확인한다.

마. 옥상의 물탱크 등 과적 여부를 확인한다.

바. 옥상과 파라펫의 균열 발생을 확인한다.

사. 외벽 벽돌줄눈의 경사방향의 균열 여부를 확인한다.(침하여부 확인)

아. 기둥·보 등 주요 구조체의 균열·누수·철근 노출 여부를 확인한다.

자. 옥상 드레인(배수구) 주위 막힘 및 방수면의 파손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차. 경량철골조 지붕구조의 변위·변형 상태를 확인한다.

## 5. 시설물 이상 발생시 대처요령

가.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에 균열이 있는 경우

- 균열발생 부분이 미장면인지 구조체인지 확인한다.
- 구조체 균열이 3mm 이상이면 전문가에게 점검을 요청한다.

나. 건물 주변에 지반이 침하된 경우

- 침하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건물 기초부분까지 침하되었을 때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다.

다. 현관이나 내부의 천정재가 탈락된 경우

- 천정틀을 보수·보강하고, 클립 외에 고정나사 설치를 고려한다.

라. 바닥 플로어링이 부풀어 오를 경우

- 습기 제거를 위하여 바닥에 환기구를 설치한다.

마. 벽체의 페인트 면이 벗겨진 경우

○ 벗겨진 면 안에 도장면이 또 있다면 긁어내고 재도장한다.

바. 비가 온 후 창호 주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 창호틀 주변의 코킹 충진상태를 확인하고 코킹재를 밀실하게 재시공한다.

사 건물과 건물의 연결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 건물과 건물의 연결부분을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밀실하게 시공한다.

아. 외벽 드라이비트(외단열)가 파손 및 탈락된 경우

○ 모서리, 바닥부분은 보강재를 넣은 외단열재로 재시공한다.

○ 탈락된 부분을 재시공할 경우 반드시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 화재로 인하여 콘크리트가 훼손된 경우(전문가가 시행)

○ 콘크리트가 박리, 박락되고 철근이 노출된 경우 정밀안전진단 업체에 점검을 의뢰한다.

## 2. 증·개축 시설공사장 안전관리

### 1. 안전점검 주요 내용

가. 농어촌인성학교의 시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제반 관리 사항에 대여 점검을 철저히 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 2.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 여부를 확인한다.

나. 안전 및 주의표지판을 부착하고 학생 출입통제를 위한 현장 경계 시설물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다. 현장 주변 학생 통행에 방해되는 자재 및 청소정비 여부를 확인한다.

라. 위험시설물에 대한 학생 접근금지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마. 공사장 고압선로에 대한 안전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바. 학생 통행에 위험이 없도록 배선 정리정돈 여부를 확인한다.

사. 전기위험시설 울타리, 담 등 방호시설 여부를 확인하여 학생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아. 낙하물방지망은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학생 통행시 낙하물에 의한 사고위험 여부를 확인한다.

자. 비산먼지방지망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되어 학생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차. 중단된 건설공사장은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와 주변 건물의 침하·균열 등에 대비한 점검을 강화한다.

## 3. 점검 결과 조치사항

가. 점검 결과에 안전위해요소 발견 시는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안전위해요소를 현장 대리인에게 즉시 시정·보완토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다. 외부 공사장에 대해서 공사감독관은 허가기관인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학생안전에 위해 되는 요소의 시정요구 협조를 통보한다.

라. 안전위해요소가 시정·보완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집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3.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위험지역 지정·관리

## 1.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가. 지정근거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제1항제5호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의 지정·관리 및 정비

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 소관 시설 현황 파악

나. 일제조사 및 지정방법

① 조사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3조에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지역)을 제외한 관할 지역에 소재한 물놀이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 및 예상가능 취약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조사시기

▶ 일제조사 : 매년 5월(연 1회 실시)에 실시한다.

▶ 수시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실시한다.

③ 조사방법

▶ 재난관리부서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부서를 지정한다.

▶ 시설관리부서에서 소관시설 세부조사계획 수립·실시한다.

④ 일제 조사시 유의사항

▶ 기본계획 수립시 조사대상시설의 관리부서를 반드시 해당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함으로써 관리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조사시에는 향후 추적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 관리대장, 위치도, 전경사진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로 정리한 후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⑤ 조사결과 조치

▶ 대상시설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련법에 의거 시설별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사용 제한을 요할 정도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 대한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사고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물놀이 특정관리대상시설(E등급)”로 지정하여 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 설정 기준 >**

◇ 하천 등과 같이 여러 행정구역을 걸쳐 있는 동시에 동일 시설명을 사용하는 물놀이 장소의 경우 최소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정해진 단위구역별로 별도 명칭 부여
예) OO도 OO시 OO구 OO동 OO천 1구역(임의 별도지정)

▶ 물놀이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하고 위험구역 설정·관리 및 공보, 게시판 등을 통해 고시한다.

* 특정관리대상시설 해제는 물놀이 안전대책기간 종료시 자동 해제됨

▶ 조사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신규 발생이나 기존시설의 각종 변동사항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D/B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D/B에 점검사항이나 변동사항을 입력·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두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관리
* 기타 지정 및 관리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 참조

## 다. 물놀이 특정대상관리시설의 관리·운영

▶ 물놀이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관리는 유관기관별 역할을 참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관리책임 >**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3조에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직접 관리하는 지역을 제외한 관할 지역에 소재한 시설(지역)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관할지역내 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필요시 안전조치를 촉구하여야 함

## 2. 위험구역 지정·관리

### 가. 위험구역의 지정·관리

▶ 관리주체 : 자치단체

▶ 지정 기준 :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곳은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물놀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어 자치단체(지방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사용금지 및 입수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물놀이 안전선을 설치하고 물놀이 금지 및 출입통제

### 나. 위험구역의 운영

▶ 위험구역에는 물놀이 안전선을 설치하되 기존의 재난안전선(Safety Line)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부표, 로프 등 활용

▶ 물놀이 안전선을 설치한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지역에 위험구역의 범위, 설치기간, 설치사유, 긴급연락처 등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마을권역 내 주민, 관광객 등에게는 앰프방송, 자동우량경보시설 등을 활용, 홍보방송을 통하여 위험을 알리고 입수 금지 등 조치

▶ 위험구역을 홍보함으로써 이용객의 출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물놀이 장소 입구에 안내게시판을 미리 설치한다.

▶ 하천, 산간계곡 등 물놀이 위험구역이 수시로 변동되는 장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 3. 일제조사 흐름도

| 조 사 절 차 | 추진기간 | 추 진 내 용 |
|---|---|---|
| 기본계획수립<br><재난관리부서><br>시행계획수립<br><시설관리부서> | 매년 4월 | •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조사범위, 소관부서 결정 등 조사계획 수립(시설관리부서에 통보)<br>•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br>• 조사반 편성 등 세부시행계획 수립 (재난관리부서에 통보) |
| 일제조사실시 및<br>조사결과조치<br><시설관리부서> | 매년 5월 | • 특정관리대상시설 선별<br>• 안전점검 및 시설물 상태평가<br>•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위험요인 해소대책 수립 (재난관리부서에 통보)<br>• 관리카드 작성 및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br>• 공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에 고시<br>• 위험구역 설정·관리<br>• 관계인에게 지정사실 및 안전조치 통보 |
| 특정관리대상시설<br>관리대책 수립<br><재난관리부서> | 매년 6월 | •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작성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br>※ 매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자료 확인 후 확정 |

## 4. 물놀이 시설(지역) E급 상태평가 기준

| 등급 | 상 태 | 평가(조치)기준 |
|---|---|---|
| E급 | ◦ 물놀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시설·지역에 대하여 사용금지 및 입수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시설) | ◦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지역(시설) |

## 참고 5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 상해 급별 | 보험금액 | 상해부위 |
|---|---|---|
| 1급 | 1천500만원 |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br>2. 척추체 분쇄성 골절<br>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4.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br>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br>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br>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br>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br>9. 화상·좌상·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체표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br>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br>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br>12. 그 밖의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2급 | 800만원 | 1. 상박골 분쇄성 골절<br>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br>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 상해 급별 | 보험금액 | 상해부위 |
|---|---|---|
| 2급 | 800만원 |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br>5. 슬관절 탈구<br>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br>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br>8. 천장골간 관절 탈구<br>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br>10. 그 밖의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 800만원 | 1. 상박골 경부 골절<br>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br>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br>4. 수근 주상골 골절<br>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br>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외의 자의 경우에는 수술의 수행여부를 불문한다)<br>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br>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br>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랑씨시(Lisfranc) 관절의 골절 및 탈구<br>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br>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 출혈로 수술한 상해<br>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br>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 상해 급별 | 보험금액 | 상해부위 |
|---|---|---|
| 3급 | 800만원 |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br>15. 경추궁의 선상 골절<br>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을 시행한 상해<br>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br>18. 그 밖의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4급 | 700만원 | 1. 대퇴골 과부(원외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br>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골절<br>3. 거골 경부 골절<br>4. 슬개인대 파열<br>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br>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br>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br>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br>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br>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 인대, 내·외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br>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br>13. 그 밖의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5급 | 7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br>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br>3. 족종골 골절<br>4. 상박골 간부 골절 |

| 상해 급별 | 보험금액 | 상해부위 |
|---|---|---|
| 5급 | 700만원 |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br>6. 척골 근위부 골절<br>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상해<br>8. 족배부 근건 파열창<br>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br>10. 아킬레스건 파열<br>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br>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br>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br>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골절<br>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br>16.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br>17. 그 밖의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400만원 |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br>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br>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br>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br>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상해<br>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br>7. 단순 손목뼈 골절<br>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

| 상해 급별 | 보험금액 | 상해부위 |
|---|---|---|
| 6급 | 400만원 |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br>10. 척골 주두부 골절<br>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br>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br>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br>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br>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br>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br>18. 그 밖의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400만원 |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br>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br>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br>4. 고관절 탈구<br>5. 견갑 관절 탈구<br>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br>7. 족관절 탈구<br>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br>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두개골 골절<br>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br>11. 그 밖의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180만원 |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br>2. 쇄골 골절<br>3. 주관절 탈구<br>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

| 상해 급별 | 보험금액 | 상해부위 |
|---|---|---|
| 8급 | 180만원 |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br>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br>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침범을 포함한다)<br>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br>9. 다발성 늑골 골절<br>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br>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 손상<br>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br>13. 안구적출술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br>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을 제외한다)<br>15. 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br>16. 그 밖의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9급 | 180만원 |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br>2. 요골 골두골 골절<br>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br>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br>5. 손바닥뼈 골절<br>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br>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을 제외한다)<br>8. 발바닥뼈 골절<br>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br>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 상해 급별 | 보험금액 | 상해부위 |
|---|---|---|
| 9급 | 180만원 |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br>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br>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 탈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br>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br>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br>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br>17. 그 밖의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 | 120만원 |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br>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br>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br>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br>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수지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한다]<br>6. 수지 신전근건 파열<br>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br>8. 그 밖의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1급 | 120만원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br>2. 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br>3. 비골(코) 골절<br>4. 손가락뼈 골절<br>5. 발가락뼈 골절<br>6. 뇌진탕<br>7. 고막 파열<br>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br>9. 그 밖의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상해 급별 | 보험금액 | 상해부위 |
|---|---|---|
| 12급 | 60만원 |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br>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br>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13급 | 60만원 |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br>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br>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14급 | 6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br>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br>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비고]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 상해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 참 고 자 료

- ❍ 농어촌인성학교 운영 매뉴얼 및 교육 프로그램(농림축산식품부)
- ❍ 물놀이 안전매뉴얼(소방방재청)
- ❍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매뉴얼(식품의약품안전청)
- ❍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안전관리 가이드북(소방방재청, 한국소방안전협회)
- ❍ 재난대응·학교안전관리 매뉴얼(인천광역시교육청)
- ❍ 창의적 체험활동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인천광역시교육청)
- ❍ 성폭력 예방, 이렇게 합니다(대전광역시교육청)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종합 매뉴얼(경기도교육청)

## 자 문

- ❍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 학생건강안전과)
- ❍ 여성가족부(폭력예방과, 아동청소년보호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예방과)
- ❍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 농어촌인성학교 안전관리 매뉴얼(개정)

**발 행 일 : 2014년 8월**

**발 행 처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